
 교육부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1. 15.(월) 배포</p>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									
보도일	2021. 11. 16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1. 16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 이후 보도 가능											
담당과	교육시설과	담당자	<table border="0"> <tr> <td>과 장</td> <td>정영린</td> <td>(☎ 044-203-6308)</td> </tr> <tr> <td>사무관</td> <td>임선규</td> <td>(☎ 044-203-6306)</td> </tr> <tr> <td>주무관</td> <td>채정이</td> <td>(☎ 044-203-6582)</td> </tr> </table>	과 장	정영린	(☎ 044-203-6308)	사무관	임선규	(☎ 044-203-6306)	주무관	채정이	(☎ 044-203-6582)
과 장	정영린	(☎ 044-203-6308)										
사무관	임선규	(☎ 044-203-6306)										
주무관	채정이	(☎ 044-203-6582)										

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**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**
 -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, 아동복지시설,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
- ◆ **학교복합시설의 설치, 운영·관리 구체화**
 -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·관리 방안 규정
- ◆ **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**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16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1.3.25.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
-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.
-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학교복합시설의 범위】 : 시행령 제2조

-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*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, 아동복지시설,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.

* 공공·문화체육시설, 주차장, 평생교육시설

【학교복합시설의 설치】 : 시행령 제3조

-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 (CPTED)*하도록 규정하였다.

* CPTED :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

-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, 지역 주민,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【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】 : 시행령 제4조

-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·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.
-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,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·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.

【전문기관의 지정 등】 : 시행령 제5조

-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, 연구·자문, 운영·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,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」 전문

대통령령 제 호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교복합시설의 범위)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
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
3.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

제3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.

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, 지역주민, 관계

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(이하 “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”라 한다)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
3. 시설물을 훼손·멸실하는 행위
4. 영리행위
5.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

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·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1.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
2.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3. 소음, 유해물질,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이용료 징수 등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, 연구·자문, 운영·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2.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